

박형준 / 5월 / 기출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5	11.5	16.5	11.5	58	1	3.85%	4	26
562576	15.5	10.5	14.5	12	52.5	2	7.69%	5	
562188	16	9	17	9.5	51.5	3	11.54%	4	
562813	15.5	10	14.5	10	50	4	15.38%	3	
563199	15	10	14.5	10	49.5	5	19.23%	5	
563528	15	9	15	10.5	49.5	5	19.23%	4	
562350	16	8.5	13	10	47.5	7	26.92%	5	
562403	12.5	10.5	14.5	10	47.5	7	26.92%	4	
562434	13	8.5	16.5	9.5	47.5	7	26.92%	5	
562320	13	8	15	9.5	45.5	10	38.46%	4	
562578	13	9.5	13	9.5	45	11	42.31%	4	
562176	11	10.5	14	8.5	44	12	46.15%	4	
563288	14.5	8	12	9	43.5	13	50.00%	5	
562305	12.5	9	11.5	9	42	14	53.85%	5	
563002	10.5	10	12	9.5	42	14	53.85%	5	
562397	14.5	7	12	7	40.5	16	61.54%	4	
562189	12.5	7.5	13.5	6	39.5	17	65.38%	3	
562358	14	6.5	11.5	7.5	39.5	17	65.38%	5	
562508	13.5	8.5	12.5	4	38.5	19	73.08%	4	
563033	13	8.5	13	4	38.5	19	73.08%	3	
562354	11	9	12.5	5.5	38	21	80.77%	4	
562408	10	5.5	14.5	8	38	21	80.77%	4	
562342	10	5.5	13.5	8.5	37.5	23	88.46%	3	
562924	12	3.5	13.5	7	36	24	92.31%	4	
562372	10.5	6.5	4.5	6.5	28	25	96.15%	5	
562326	8	3	8.5	7.5	27	26	100.00%	4	

<p><b>박형준/5월/기출GS/6회/1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 1번은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우셨을 다논점 조치문제였습니다. 조치는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은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과 관련하여 갑, 을 및 병의 상호 법적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답안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심결 선고 전 조치, 선고 후 확정 전 조치, 확정 후 조치로 시계열적으로 나누어 작성하신 경우가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p>일반론을 두껍게 적어 양을 채워서 조치를 다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치 하나 하나에 일반론들을 두껍게 적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을 답안에 녹여주시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보호범위 속부를 검토한 후, 과실 부존재 입증사항에 대해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직접침해 여부는 대부분 잘 검토해주셨으나, 사실관계 상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간접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정정심판에서 의견제출기회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심결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갑,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 취하 후 재심판 청구 등 다양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p>	

재심을 작성해주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의견제출기회 박탈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소결**

다논점 조치 문제는 정말 볼 때마다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조치 문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만큼, 까다로운 유형인만큼, 저도 해당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강사님의 목차 구성을 템플릿처럼 기억해놓고 준비해갔습니다.

<p><b>박형준/5월/기출GS/6회/2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문제 2번은 국내우선권주장 및 침해소송에 대한 조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 역시, 조치 문제가 섞여있고, 문제 자체의 길이가 긴 만큼, 모든 논점을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에서의 주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주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가 어떤 논리로 출원인 변경신고를 요구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두껍게 판례로 현 출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논리 흐름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침해소송에서의 무의 법적 조치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하는만큼,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에 있어서, 비침해 주장, 효력제한(96조 1항 3호), 선사용권, 특허권 하자 관련 조치들을 모두 검토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b>3. 소결</b></p> <p>대부분 큰 논점들은 잘 찾아주셨고, 답안도 다들 잘 작성해주셨으나, 일부 논점들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후 놓친 논점들에 대해서는 오답노트 또는 단권화 등 같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5월/기출GS/6회/3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문제 3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다논점 조치 문제였습니다. 설문 3개 모두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으나, 다들 템플릿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이뤄진 조치문제였던 만큼,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은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인 갑의 조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무권리자 출원 조치 유형은 템플릿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치에 앞서, 무권리자 출원인지, 갑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무권리자 출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선결적으로 검토해주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대부분 갑의 경우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독점권이 제한되므로, 침해라는 점, 그리고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등록으로 인해 전용실시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잘 찾아주셨습니다.</p> <p>다만,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가 생산한 발명을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 그로 인해 전용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해주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이용관계인지를 검토한 후, 실시를 위한 조치를 묻는 문제로서, 해당 유형 역시 템플릿이 존재하는 만큼, 이용관계 잘 포섭해주시고, 조치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용관계 자체를 다뤄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3. 소결

그나마 템플릿으로 준비해놓은 조치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감 있게, 다각적으로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치 문제는 되도록 사실관계를 짧은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나, 기출 문제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5월/기출GS/6회/4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문제 4번은 공동발명에서의 단독출원, 단독 심사청구 가부, 그리고 거절이유 해소 조치 논점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나, 설문 3번의 러프함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공동발명의 경우 단독출원 가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33조 2항 및 44조를 통해 조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조문과 함께, 답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단독 및 제 3자 심사청구 가부를 물어보았는데, 심사청구는 복수당사자 대표(11조) 규정에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에서는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유를 물어보는 러프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포섭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 등의 조치를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공동발명인 제조방법에 대한 등록 조치도 잊지않고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p> <p><b>3. 소결</b></p> <p>전체적으로 조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되었던 회차였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 문제 4번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치 문제를 많이 연습해볼 수 있고, 오답노트 등을 통해 잘 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p>	

문제 -

8.5 18.5

2 실문 1)

1 문제집 - 무효심판 심결 관련 조리 - 법1332

하가임은 특정한 공익상 도열 시키는 기조이다. 근저 특허권이  
따라서 특허 심결 관련 조리를 살린다

2 심결 항결 권 조리

(1) 적부

1) 이해 관계인 법1332 1항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 관계인으로 한정한다

2) 특허 심사위원 이해 관계 제한 조항 (소3)

① 심사위원 이해 관계 제한 관련 제1항

문래 제1항은 개청 영커 임의 이해관계 부정하면  
제2항 제1항은 불이행 있어 이해 관계 공결 한다

② 제2항 2의 특허심결 심결 원예 - 법1332 4항

공제인 특허권은 공적 특허 상 보유자 같이 심사  
심결 할 것이 필요하다

③ 소결

① 특허 심사위원이 아니라 ②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 부정 되기 않는다.

3) 적부 관련 조리 - 부쟁항의 소

제1항은 심판 계속 중 부쟁항이 든 원고이고. 소의 이익



어떤 각각 하므로 복행 양의 식도 해본다.

(2) 본안

1) 甲 - 문헌상 주장

: 즉으로 1항은 이유로 특허 권한을 얻은 주장한다.

2) 甲, 乙 - 문헌상 부정

공기발명의 선행기술 목적 및 필수성 완전 신한다.

3 심결 선고 후 코리

(1) 甲과 乙의 코리 (기각 심결의 경우)

1) 정당 심판 청구 - 고처결정 공통점

법 139조 3항에 따라 甲과 乙은 정당 심판 청구 모두 같이 청구 필요 하다

2) 심결 취소 소송 - 유사결정 공통점

법 181조 2항은 법 139조와 같은 권리 없고  
취소 소송 대상 보다 유사 결정 취소 소송 대상  
원고 목적 정 하 므로 甲, 乙 중 1명 이 행사 가능 하다

(2) 甲의 청구 (인용 심결의 경우)

1) 심결 취소 소송 - 판결 목적

법 181조에 따르면 甲 또는 乙 중 1명 만 대항 으로  
가능 하기 만 판결 목적 모든 대상 청구 가능 하다.

2) 새로운 문헌상 주장 - 특례 한 실 취소

심결 취소 소송 특정 목적 가 기 모 다른 청구



사위인 독광 하여 부호 1호 차별하리

4 심판 확정 후 조치

(1) 인용 심판 확정 후

1) 甲 조치 - 특허권 행사 불가

(특135조 3항에 따라 특허 소송 부호 외므로  
특허권 행사 불가 함 하리

2) 丙 조치 - 기각된 심판 항소 불가

(특135조 제4항 2항에 따라 심판에 대한 항소를  
부정하므로 丙은 甲에게 승자로 항소 불행함

(2) 기각 심판 확정 후

1) 丙 조치 - 일부 취소 : 특165조

(새로운 부호 사용 주체가 없음으로 일부분 개리로  
원래 같은 부호 사용 가능함

2) 甲 조치 - 특허권 행사

[침해금지청구]는 공정가 증 1인 행사 가능하고

[권리 배정 청구]는 지불 한정 해 청구 가능하고

[권리 양용] 광범은 대용 외 아니할 것이라

2 실문 (2)

1 J의 행위가 甲의 특허권 보호 범위 속 (적극)

(1) 직접 침해 여부 (적극)



1) 구성요소의 완비 및 속귀 권리 권익상 침해 여부 (소극)

공급 또는 판매 권익상 생략 침해로 부당하고 속귀의  
권익상 공중 생산 권리 보호 위해 인정이 어렵다

2) 국내 생산 간극 범위상 침해 여부 (적극)

① 국내 생산 간극 범위 상계

반례를 이 국내에서 생산 되어 개별로 수출되고 가용권  
을 갖기 예외가 있고, 가용 권리가 국제 사법재판  
간단한 전기 특권 침해는 구성하고 간극한가

② 사안의 경우

J는 대부분 생산 단계로 수출 반례를 이 국내 생산도, 가용  
권리 갖기 여부 국내생산 간극 범위상 침해 문제다.

(2) 간접 침해 여부 (제한적 적극)

1) 구성요소의 침해 여부 - 생산의 이미제한 (소극)

간접 침해는 특허권이 권리가 부정하게 확장되기  
당분 범위 에서 인정 되므로 개미 생산 과 인정 되지  
특권 침해 개미 생산 간접 침해 부정 주요 가

2) 계절법상 침해 여부 - 2025.01.22 개정 (제한적 적극)

특이적으로 2호에 수출이 제한 되긴 하였으나. 반례를 이  
[권용권] 여하에 따라 간접 침해 가 결론 되기 가 -  
다음 은 판단 이 필요 하다.

2 J이 과실이 없다면 하기 위해 권용권 사항



(1) 法 1303 의의 취지

임금 책정 권한 사계 황제에게 과할 정도로 인정함

(2) 분별 방법 ① - 국공 황제에 관여

황제는 ① 총제권 을 지킬 필요가 없거나

② 총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함 을 인정할 수 있음.

(3) 분별 방법 ② - 간접 황제에 관여 (완화)

황제는 ① 총제권의 권리를 불리 보지 않거나

② 권리를 잃지 않음 인정 하면 된다 함.

II 실문(3)

1 권력 기관 심판의 타당성 (소극)

(1) 권력 심판 의의 취지 : 法 1362.

총제권이란 소극로 총제권이 제한 내용도 변  
권력 기는 제로 이다

(2) 실제적 요인 - 法 1363 1. 34. 5항

3가 불가라 범칙은 9배 권력 형식, 선사할 수가  
금지, 실정적 행정 금지, 국공 속해 9배 도감다.

(3) 실제적 요인 - 法 1363 6항

심판 관은 기관심판 관 가치 관계 양사 관계  
이전 관 가치 관계 관계 관계

(4) 사안적 경우 - 실제적 위법 있음

실제적 관공이 권력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11.5

문제-2

2 실문(1)

6

1 문제권 - 法 16조, 46조, 보정명령의 타당성

의식 재산 처분의 우선 처분의 타당성은 살피기 위해  
보수 위반 관한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

2 자기 귀속 - PCT B(2)(b)

PCT 관련 국내 출원 국가는 기술 정보 국내  
출처에 대한 관공은 한다.

3 국내 출원 국장

(1) 호 552 다

관사라 권리를 위해 계약 체결시 개 해  
국내 관공 다원 호는 해로운 데도 이고

(2) 무권 출하

선출원시 최초 면제 사변 3면에서 기재된 다른  
관련 국공 불허 할 원자 가가 행수 해야  
선출원 후 1년내 출원국 출원시 후기 출원  
선출원도 면제 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 국제적 무권 출하

J이 출원시 출원시 면제 변경 선출 하가 발로  
게 출제 가 출제

#### 4 국제적 요건 관련 문제

##### (1) 관련 규정

###### 1) 법 55조 1항

특허권 발생을 위한 권리가 발생 가능하

###### 2) 법 363 4항

출원인 명의 변경 시에 특허 발생 요건이

##### (2) 관련 판례

###### 1) 법 55조 1항 출원 해석

법 52, 53조 조는 법 54조 다른 말로 특허권

발생 시 출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

개량발명을 위해 권리가 발생하기 위함이라

###### 2) 법 363 4항 적용 범위

출원 후 출원인 명의 변경은 특허 발생 요건

발생 요건이 아닌 다른 권리 출원 관련 문제

특허권 발생을 위한 요건과 관련 없는 사항

###### 3) 출원인 명의 변경 권리원칙 - 결함

출원인 명의 변경은 권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다만 출원인 명의 변경은 특허 발생 요건

##### (3) 사안의 경우

본 출원인 명의 변경은 출원인 명의 변경 요건

#### 5 결론 - 무효 처분 부당

절차적 관행을 위반한 위법 처분이 아니다

II 설문(2)

5.5

1 카라 관련 항변

(1) 당연 무효 주장 거부 (소극)

취재원료 무효 심판이 크게 지기 고려 하여  
무효 사유가 명백 하더라도 당연 무효 아니라고 할지

(2) 권리 범위 불명 거부 (소극)

공지가 될 때의 범위 취재원료 산출은 과한 차지게  
권리 범위 명기 하기 확충 하는 것만 제외하고  
만지

(3) 권리 내용 항변 거부 (적극)

사적 자의 일방적 공중에 기해 하기 양호  
형식적인 권리 행사만 인정 하는 것만  
실질적 권리 및 공평성에 비추어고 특히 법제  
입법 목적에 별기 ~~양호하고 권리행사의 전제조건이~~

(4) 과잉지급 항변 (적극적 적극)

불인 취재비 편수에로 과잉지급 항변 가능하고  
~~권보상 기판도 불명명기이 법은 권익 보아~~  
불명 하기만 과잉지급과 권리 범위 불명기

2 심사유권 항변

① 훈환 권 2019.08.05 복려 법령 시행하고

② 선의 임은 입증 하면 ③ 심사유권 인정 권리



### 3 특허 제1항 항변

(1) 法 96조 1항 3호

특허 출원권 주체 요건 충족에 개개 특허제정권자

(2) 사안의 경위

X"은 출원번호 2014, 08.05 특허 요건 불충

이므로 특허 제1항 사안이 있다

### 4 특허실권 항변

(1) 적부 - 이해관계인

戊는 甲 특허에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사람 이므로

특허실권 항변 이해관계인 요건이 있다

(2) 가분안 - 법29조 2항

A'의 권보행 결여는 甲은 특허실권 항변하여

甲 특허를 취소 시킨다

(3) 사권적 권리 - 소용권기행

특허실권 항변 요건 法 169조 2항에 기하여

소용권기행 항변

### 5 戊' 특허권 확보 (소용)

자기 실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로 공인출원

요건이 있는 사안이 있는 한, 완전성 요건이다.

문제-3

4.5 16.5

1 실문(1)

1 발명 A의 권리자 문제

(1) 원칙적 권리 문제 - 영권 면권 들

특332 2항에 따라 공동발명으로 공동 권리 있다.

(2) 특별적 권리 문제 - A

명시적 이권은 아니지만 묵시적 이권으로 모든 발명 A가 권장할 권리 아니냐

(3) 특권위과 - C

A와 C 사이에 특권 관련 태도가 없음으로 C은 특권위과 이라

2 무권리가 C 출원시 별격지위 - 권리 지위

무권리 출원은 선권 지위가 없고 특제된 선출원으로 정당  
권 권리자에게 초격 없다. 다만 권리 지위 지위가 없다

3 출원권 공한 권리

(1) 동시 출원

C 출원 권리 권리자일 가능 하냐

(2) 권리 예외 규격 공한 출원 - 특3302 1항 2

C 출원 권리 후 1년 이내에 의사에 반한  
공시 규격 하에 출원 가능 하냐



(3) 징역형 권리회 복귀 - 법 343

1) 사면의 크기 - 권보 계를 법 343의 2

법 333 1항 후 기판으로 권보 계를 본 할지

2) 소결

법 343 중의 중시 기결 불결 30일내 결선 할지

4 결연의 형식 변경 관한 크기

(1) 신형 - 합의서

2차 합의서 결연의 형식 변경 신청 할지

(2) 원구 - 합의 불발시

합의가 이루어 되지 않았는지 형식 변경 원구 인정 할지

5 기타크리

기판 행크리, 양도, 불연나 보강 큰 도기 할지

II 실문(2)

6.5

1 甲의 권용살해권과 여부 (각각)

법 1013 1항 2호 따라 등극 하안으로 가을 권용 살해권과 에 인정 할지

2 甲의 특채권 침해 여부 (각각)

(1) 법 913 1항 1호

권용물처럼 실용성도 권유권 방식 제한 된다

(2) 사안의 경우

4은 권유권 실용성 이후 특의 권용물사건 관련  
합계를 하고 보기

3 특의 합계 여부 (제한적 적극)

(1) 3대 행위 (적극)

1) 특 2조 3호 사용 여부 확인

실용성 별명식 일사본 출제본 생산 사용 양으로  
 제한적 긍정한다

2) 사안의 경우

3대 행위로 실용성가 대체로 합계가  
선량하기 아니 한다

(2) 판례 행태 (적극)

1) 특 11조 1항 외의 확인

특용물사건은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라에게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2) 사안의 경우

특은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3) 특으로 부러 3대한 카메라 판례 행위 (제한적 적극)

1) 특이 소인 여부 (적극)



法 943 1항 1호에 의해 부근 관련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카메라의 안으로 권위 소생되지 않으므로  
권해 여부가 없다.

2) 동등권 침해 방지 (불분명)

동등권 침해는 발명 4는 생산 및 판매되는  
행위 한정 하명문에 안으로 권리 구별된 제조  
까지 포함 권리 의존 이

3) 소명

동등권 침해 방지 대해 권리 침해 가능 성이 있다.

4 甲 관련 권리

(1) 민사권 권리

침해금지 (126) 손해 배상 (128) 연속적 (131)으로  
발 부정 이 행위 제한

(2) 형사권 권리

침해죄 (225) 불속 (236) 양벌규정 (235)으로  
고소한다

(3) 기타 권리

권리 침해 방지 소명 및 세 면 제한

5 乙 관련 권리 구분

(1) 안으로 부러 구분 행위 - 동등권 행위 시도



항해 여객 항술하게 하기 5세 무제한 행사 행사

(2) 2의 항해 - 크리 불가

2의 항해 5세 개비 5는 크리 불가 없다

(3) 실내 급기 계약 이도

4의 4리 원배 상 실내 급기 계약 이도

II 실문(3)

5.5

I 이용관계 성립 여부 (각각)

(1) 항설

2대를 이용설, 권부 항설, 개관 불명설, 실사 보자권 항해 보자권 설 등 다양한 전제 가 있고

(2) 취소제

1) 부가 관련 취소제

특의 불명세 새로운 부분이 부가되면 호기권 권부 포함 하고 이를 2대로 이윤회에 열거선이 지기 지는 전후 이용관계 성립하고 권부이윤에 미치지

2) 일체성 관련 취소제

새로운 구성 부가로 증인한 후관 불취한전 후이권 기권 불명세 일체성 지리 하면 이용관계 이다.

(3) 경도나 사안

선형 방향 보호 2 지에 일체성 중요로 고지성 취소제 타당성 관상용 보호 카메라 A는 멀리상 카메라의 기능





11.5

문제-4

1 선분(1)

3

1 ~~물권 AB의 권리 속 형제 - 공유~~

(1) 공동발명 의미 회기 : 법 333 2항

발명자 또는 수제 공동발명인 한 경우 동적으로  
발명 수 있는 권리 행한다

(2) 사안의 경우

나라 C은 물권 AB와 그 제법은 근근 발명  
하일므로 동적 발명 수 있는 권리 행한다

2 단독 출원 거부 (23)

(1) 근거 - 법 443

특허를 발명 수 있는 권리는 공적 이익을 위하여  
공중 출원 권도 하다

(2) 설명

나라 C은 물권 AB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므로  
공동 출원 해야 하고. 단독 출원시 법 443 위반  
의 하가 있다.

3 결론 - 단독출원 불가

443 에 따라 공동출원 보한다



## II 설문(2) 3

### 1 甲과 乙 단독 심사 청구 거부 (제3항 적용)

#### (1) 근거 ① - 법 11조 1항 본

2인이상 동시 출원한 경우 각각 동시 출원  
출원한 것을 한다

#### (2) 근거 ② - 법 11조 1항 단

라만 출원자가 선출된 경우 출원한  
출원한 것을 한다

#### (3) 사안의 경우

출원자 비선출시 각각 단독 청구 가능하지만  
선출시 그 외만 심사 청구 가능함

### 2 제3자 임의 심사 청구 거부 (제3항)

#### (1) 근거 ① - 법 59조 2항 본

5주 등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 가능함.

#### (2) 근거 ② - 법 59조 2항 단

출원인은 물론 요건에 제 3자가 있다.

#### (3) 사안의 경우

[제3자]도 5주 등의 이유로 심사 청구 되고

[임의]는 3개월 출원인이 아니므로 제 3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II 실문(13) 5.5

1 대응 전략 - ~~기술~~ 기술이 공개 타당성

기술이 공개 타당성과 관련 하여 대응 크리다  
갈라 진가.

2 지출에 관련 크리

(1) 기술 결정 권 크리

1) 의견내

문란 AB가 기술자가 인가 극량 한가.

2) 보장

문란 AB에 ~~개한~~ 보장이 가능한 한도에 이 보장  
이 가능 하도

3) 변경권 - 불가

지출 지출 디백터므로 실용 신안 범상 하도하기  
아니하고 일가.

4) 분할권 - 제한적 작곡

제3방법이 발명사 유생 기계에 한하여  
권 가능 하도.

(2) 기술 결정 후 크리

1) 사권적 크리 - 분할권

분할 권으로 제3 방법 극대 시도 가능 하도

2) 기술 결정 불부 상관 - ~~지출~~ 132321 17





<문제-1>

155

I. 설문 번 6.5

1. 범 - 무권심판 (法 1332)

공익 해를 끼칠 특이한 권리 행사는 권리 행사의 시비별 조치가 부여된다.

2. 특의 청구의 종류

(1) 특의 청구

1) 法 993 4항

공유자는 모두 동의를 받고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안

특의 동의를 받은 바 처분 무권리이다.

(2) 야외권변 (法 1331)

무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야외권변이란 특이권 행사  
로 인해 법정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3) 소절

특이 특이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특의 청구의  
신청 가능하다.

3. 특의 청구의 다른 심판의 종류

산정 위반의 경우 인용심판이 될 여부가 있다.

인용심판이 다른 권리로 본다.



4. 상표권 전 권

(1) 부양합의

甲, 乙, 丙은 부양합의를 통해 아이폰을 생산하여 무선으로 판매한다.

(2) 최소 권유

甲은 최저에 무선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권 - 甲, 乙은 정당권을 통해 무선으로 판매한다.

5. 상표권 후 권

(1) 상표권소멸 제기 (法 86조)

甲, 乙은 상표권소멸을 통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2) 단독 제기 거부

1) 1인의 상표권소멸 제기 거부 (제87조)

① 권리소멸 방호를 위한 보안장치로 유지한다.

② 유지하지 않고 ③ 취소하는 권을 취할 수

있다. 2) 甲 또는 乙 단독으로 제기 가능하다.

(3) 상표방기

1) 무제반설

상표권소멸 요건으로 상표를 취소할 때 반이

유지를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2) 사안

甲 또는 乙 상표의 유지를 제한 없이 취소

할 수 있다.

(4) 정외상판 (法 1362)

甲, 2은 2은의 상권권을 중시 정외상판 통역  
무효사유를 없앨 수 있다.

~~6.~~

6. 甲의 2은에 대한 권리

(1) 무효상판 조항 (法 1332)

무효상판 조항으로 2은의 특권이 2은인 2은 2은

(2) 실시권 조항 (判例)

① 甲은 2은에 실시권 조항을 권할 수 없다.

② 2은 실시권이 2은으로 2은의 2은이 2은이  
2은이 2은이다.

7. ~~2은~~ 2은 2은에 대한 권리

2은 2은에 2은에 대한 권리를 2은 2은  
2은에 2은하여 2은을 2은 수 없다.

II. 실문 2번 4.5

1. 2은 행위가 2은 특권 2은에 2은 (2은)

(1) 2은의 2은, 2은 2은의 2은 (判例)

2은에 2은 2은 2은이 2은이다.

(2) 2은 2은 (判例)

① 실시를 2은 2은 2은 2은 2은



같은 반례들이 생기기 ② 하나씩 주체에게 속이 되는  
 기금, 3점이 예외로써 ① 그 기금, 3점이 주어 시드해나  
 간단하여 ④ 유가증권 결합된 일체로서 현물을 가하는  
 점 주체 생산인 간주한다.

(3) 출산

① J이 주체에게 특허발명 A의 "주체"를 이른 반례들을  
 생산한 점 ② 바인 단계가 중국어 어휘는 점  
 ③ 기금, 3점이 사도, 관인 작성 보는 점 ④ 기금,  
 3점으로 유가 결합된 일체 현물 가하는 ⑤ J이  
생산 행위는 간주 한다이다.

(4) 저수출발

개발 행위로 인해 수출 행위도 간주 한다이다.

2. J이 과실 책임 부담 하기 위한 입증

(1) 과실의 책임 (法 1302)

책임 부담는 과실이 주체에게 특허권 의 입증 행위를  
위반 하기 때문이다

(2) 과실의 책임 부담 (法 1301)

특허권 의 입증 행위에 과실 부담 바 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책임 부담는 과실 의 신 의 책임 부담 행위  
를 부 담 할 필 요 가 있 는 행 위 이다.

(3) 특허법인 (제111)

특허가 특허권 권리를 양도 못하거나 권리방식에  
숙의 양도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안

주은 과실의 유형을 특허법 제 111 제 1항의 특허법  
A를 몰랐거나 B 특허 권리방식에 숙의 양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 실문 2번

1. 특허심판원의 권리적 이의 권

(1) 특허사 제척이행 (제111)

특허사 제척이행은 심판의 주권인 심판의 신봉을 위해  
의심 강요하는 것이다.

(2) 사안

특허심판원은 甲, 2차에 특허사제척이행을 부여하지 않은  
취향이 존재한다

2. 甲, 2의 권리

(1) 심정특허권 (제186)

甲, 2은 심판의 도발에 따른 심정특허권  
제척할 수 있다.

(2) 특허 후 개출원

특허법은 특허권의 귀속 (만년특허법 26조 2항)이 부연  
하는 바 특허 후 개출원 가능하다.

(3) 일시부각의 (法 163조)

특, 2은 동일적인 이유로 출원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시부각의 시배된다.

(4) 실질특허권 개판원1) 심도

특, 2은 심도를 통해 개판원을 부여 가능하다.

2) 재심사유 취침 불가

특, 2은 쟁쟁이 취침은 이유로 2심 (法 44조 1항 8호)  
을 취침할 수 없다.

<문제-2>

5.5

105

I. 선택 1번

1. PCT 8 (2) (b) 적용

PCT 8(2)(b)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

2. 국내특신권 귀속

(1) 특허 권리 (法 552)

특허특신권귀속의 권리를 가해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이다

(가) 원인, 결과

① 출원인일 ② 최초 발명권 부여 내역 ③ 출원서류를

④ 1년 이내에 출원 ⑤ 출원연월일, 권리를 가해

해야 한다 (法 552 2항)

3. 지식재산권법의 무효판결 타당성

(1) 연관특권

1) 法 382 4항

출원 후 승계는 출원연월일이 특허발생연일이

의 法 552 1항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최초 발명권 부여 내역

연월일을 할 수 있다.



(2) 사실

- ① 55조 1항에 특하게 발명된 것으로 가시되 발명된  
변형된다 한니 원출원인은 주어진 안으로 이  
안을 ② 법 38조 4항은 특하게 관한 권리로서  
절차 관한 변형을 가한 권리로서 우선취득이  
타당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안

- ① 특이 2019. 1. 4 에 출원 한 J이 다의 인  
 ② 법 55조 1항에 원출원인 특이 안으로 이  
 ③ 우선취득 권리는 특하게 관한 권리 대의 바  
 ④ J이 출원 변형 안을 특이 안으로 가시되 발명된 무  
효는 부당하다.

4. 결론

특이 안의 무효성은 부당하다.

D. 셋째 2번

1. 문제의 순서

2019. 1.4 출원 후 등록된 시점이 늦어 있으므로  
비제하의 문제를 풀겠다.

2. 특허권 발생 요건에 대한 검토

(1) 당연무형성 요건 불만

특허권 발생을 이유로 당연무형성요건이 불만

(2) 권리방기방정 요건 불만

신규성 불만 또는 특허권 발생을 이유로 권리방기방정  
불만하므로 (제1항) 특허권 발생을 위해  
권리방기를 부정할 수 없다.

(3) 권리남용방정 요건

1) 제1항

특허권은 사익과 관련된 바 권리남용이 확인된 경우 이를  
인정하면 신뢰의 공백이 발생하여 공익의 수호에 위하여  
특허법 입법목적에 정면 배치한 바 권리남용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남용은 권리남용이라  
장부를 선택하기 위한 권리남용의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 사안

특허권 A가 권리남용 요건에 충족한 경우 특허

침해사건은 권리남용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각권상대권 주장

$X'$ 이 각권상대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가'의 침해에 대한 가'의 조치

(1) 甲 특허권 가' 주장

가'는 권보정 행위를 이유로 甲 특허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2) 선시발원 청구 (법 132)

(가'는 2019. 8. 5에  $A'+B$ 를 선시발원 이유로 선시발원 청구 가능함)

(3) 출원권 귀속 원배달권 문건 (법 96(2) 별 3호)

甲의  $X'$  출원권인 2019. 10. 7 이전에 권리발원 문건은 권리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3>

J. 섯문 1번

4.5

14.5

1. 제1 종류의 하라 - 무원리의 권리

(1) 제 33조 1항

발명의 인성과 동등한 특성을 발할 수 있는 크기의 기술이다

(2) 발명성 (제 34조)

발명적인 제 23 조 정도의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실용적으로 가져야 한다.

(3) 사안

주은 발명성 카메라의 인연 자료를 부합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촬영한 바 무원리의 권리이다.

2. 무원리의 권리의 권리

① 가액이, 무원리가 존재하며 ② 선출된 가액이 없고  
(제 36 조 1항), ③ 공짜로 공리할 수 있는 특이된  
선출된 가액은 없다 등인 발명자에게는 바와 같다.

3. 특허 권리

(1) 통상의 권리

상업적 위법은 이유로 통상의 권리가 부여된다

(2) 공익예외규정 (제 30 조)

무엇을 공익된 목적으로 1년 이내 촬영하여 전시



비밀 공리를 이유로 라이선스권도 가능하다.

(3) 정보제공

甲은 부위와 관련된 어떤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30일 내 추후 하여 부위와 관련된  
판정사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출원 ~~출원~~ 명예발명상징 출원

甲, 2이 합의된 경우 ~~출원~~ 명예발명상징 가능하다.

(5) 출원 ~~출원~~ 명예발명상징

甲, 2이 합의된 출 장 출원인명(명예발명상징) 가능하다.

II 상문 관 5

1. 특허 권리 - 통상실시권

(1) 법 102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안

특허권 특허 허락 인사 통상실시권 권리 있다

2. 특허 권리 - 전용실시권

(1) 법 100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신청할 수 있다

(2) 법 103조 항

전용실시권 특 은 특 권 발 생 한 것 이다.



(3) 사면

가'은 부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득권한 바 가'의  
 재물은 권용신권이다.

3. 가'의 부에 대한 권리(1) 法 943 항 단1

권용신권이 설정된 것 권용신권과 상속 권위를  
 득권한다

(2) 사면명근

가'은 부의 상속 권위를 얻어 사면명할 수 있다.

(3) 민사권 권리

가'은 부에게 ① 권용신권 (法 1262) ② 상속명권  
 (法 1282) ③ 신용회복권 ④ 부양수급권을 권할  
 수 있다. ⑤ 그러므로 공판각속명령을 가한다 (法 1282)

(4) 형사권 권리

부의 상속 2년 바 ① 권용신 (法 243)  
 ② 물권 ③ 양양권이 가능하다.

4. 가'의 재에 대한 권리(1) 法 1182 항

동상신권을 득권한 것 권용신권자에게 이를 처분  
 가능하다.

(2) 생산, 판매의 경위

특정 자에게 권용권 등특을 부여 생산, 판매  
가능 가능할 수 있다.

(3) 다른 실시행위인 경우

1) 대항불가

특정 사용은 다른 실시행위는 대항불가하다.

2) 소원권

특이 권용권 등특이 큰 부양부채 부담을  
아무리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멸

권용권 등특이 부여는 특정 자에게만, 형식적 권리 가능하다.

II. 실용권

1. 이용관계의 개념

특정 부채 발생 A의 이용관계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2. 이용관계의 판정

(1) 이용관계 (부채)

선특허발명이 ①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여 ② 효과를  
전혀 포함하는 ③ 다른 과제로 이용되지 ④ 선특허발명의  
구입요건 충족이 유래한 경우 이용관계에 해당



하 ①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3) 사안

J의 발명이 특허 발명 A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  
일체권이 부여되는 것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2) 각종권과 권리 (특허권)

각종권과 특허권 둘 다를 가진 경우 이종권까지  
해당하지 않는다.

3. J의 권리

(1) 특 98조

J은 발명 A'의 실시가 제한된다.

(2) 특 99조

J은 발명 A의 실시행위를 행할 수 있다

(3) 특권자권행위권한 규정 (특 98조)

J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공적인 개량 권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권 발명권행위권한을  
할 수 있다

(4) 기타 권리

특허권 무효사유권, 역공학, 신기술수용권 등 가능하다

(5) 공정거래권 관련

J은 특허권 공정거래권을 행할 수 있다.



(6) ~~원주~~

본 원의 발명 A를 임의의 원주에 적용할 수 있다.

<끝>



<문제-4>

12

I. 서문 1번

3

1. 甲, 2의 권리

(1) 증빙명 헌 (제119)

① 가설상의 권리 취득 시점인 기여부 ② 증빙명 헌 시  
신뢰할 수 있는 상정정확해야 한다.

(2) 사안

甲, 2은 증빙명 헌 바 물권A의 권리관계이다.

2. 특허권 취득

(1) 근거법 - (제 442)

특허를 받은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관계  
취득해야 한다.

(2) 사안

① 甲, 2은 발명 AB를 침해한 관계인 바 ② 甲, 2  
공통으로 특허권취득해야 한다

3. 권리

甲. 2는 <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I. 선택 관.

### 1. 단독 실시권 가부 (각주)

#### (1) 법 113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행할 때 주자가  
모두를 배척한다

#### (2) 사안

##### 1) 배척과 권부

甲, 2층 배척권을 선점한 사람 없다

##### 2) 예외 규정 예외부

상식적으로 정당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3) 소결

甲은 2층 단독 실시권 가능하다.

### 2. 제3자나 밖으로 실시권 가부 (각주)

#### (1) 법 113 조항

특허에 대해 누른 권리를 행할 때 주자  
권리를 할 수 있다.

#### (2) 사안

##### 1) 예외 규정 예외부

발명 A는 주권한 특허권자 바 예외적으로 인정받지

##### 2) 소결

제 3자는 실시권 가능하다



3. 제3방법 권리행사의 방법

(1) 보류

- ① 발명자의 선점력이 기재된 제3방법을 권리행사 가능함
- ② 물질 AB 권리를 식별가능함

(2) ~~발명권~~

제3방법을 발명권권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3) ~~구체적 권리행사~~

권리를 식별가능함 제3방법을 권리행사 가능함  
 권리를 구체적 권리행사 통제 권리행사 가능함

4. 권리행사 방법

(1) ~~타인 권리~~

타인 권리 ~~권리~~ 행사 가능함

(2) ~~무효~~

타인 권리 ~~무효~~ 행사 가능함

5. 제3방법 권리

(1) 제3방법이 타당인 경우

제3방법발명권인 경우 제2이 ~~권리~~ 행사 가능함

(특 132의 1)

(2) ~~제3방법~~ 제3방법이 타당인 경우

타인 권리 ~~제3방법~~ 행사 가능함 (특 61조의 2)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